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정자치위원회
전문위원 고 일 준

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12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2월 4일

3. 제안이유

우리도 홈페이지 이용 및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므로, 이러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 사항에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 추가(안 제3조)

나.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, 홍보행사(이벤트)를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보상 근거 마련(안 제13조)

다. 타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교육용 유료 콘텐츠는 당해 기관

과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 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3조의2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도 홈페이지 이용 및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, 홍보행사(이벤트) 참여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

2007년 12월 21일 개국하여 2008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인터넷 수능방송 등 인터넷 방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됨.

다만, 기부행위 등을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,

본 조례안의 내용이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112조 제2항 4호의 '직무상의 행위'에 해당하여 「공직선거법」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.

붙임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